

KBIZ 중소기업연구소

정책브리프

Vol 31 | 2022. 11월

Contents

I. 중소기업 정책연구	2	II. [부록] 중소기업 경기전망	8
• RCEP, CPTPP, IPEF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			

RCEP, CPTPP, IPEF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(1/6)

백훈 교수(중앙대 정치국제학과)·박승찬 부부장(중소기업중앙회)

세계 경제질서 변화

■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 창출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WTO, IMF 등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관계 체제 붕괴
-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, 국가 간 이동성 증가로 인한 팬데믹 확산과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이 변화 촉진

■ 세계 경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들

- 과거 국제무역의 다자주의 질서가 일방주의, 소집단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의로 변형
 - 미·중 무역분쟁이 서방 동맹국가와 중국 간의 진영 대립으로 블록화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다층적 국제통상 질서 형성
 -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미국, EU 등 주요국들은 양자·복수국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

※ **다자주의** : 공동 사안에 기반하여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개별국가 이해관계는 공동 이해관계에 종속됨(예-WTO, IMF 등)

※ **소집단주의** : 다수 국가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상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연합방식(예-RCEP, CPTPP, IPEF 등)

※ **일방주의** : 다른 국가와 협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 국가의 일방적 대외전략으로 자국행위에 독립성을 유지함(예-미국의 IRA 등)

- 중국, 러시아, 인도 등 신흥강국들이 기존 국제관계 규칙을 바꾸고, 그 근본을 변화시키려 행동하면서 지정학(geopolitics)의 재등장

※ 지정학의 재등장 의미

1. 신흥강국들은 자신들과 인접한 지역에 전략적 영향을 확장하고자 함(중국↔대만, 러시아↔우크라이나 등)
2. 새로운 국가 간 연대 추구(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)

■ 기후변화·디지털·노동·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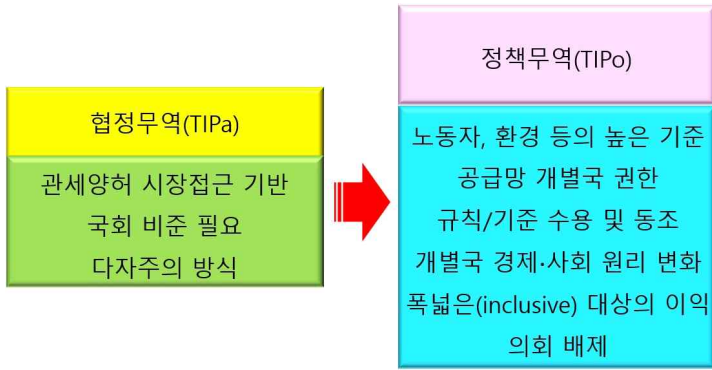
-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환경보호 의무 조항이 강화
-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조치 등 타국에 환경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제재도 현실화
- IT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본격화
-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·인권 의무조항을 강화하면서 신흥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확대

■ 미국의 인도-태평양지역에 대한 접근방식이 협정무역(TIPa)에서 정책무역(TIPo)으로 변화

- 과거, 시장접근 양허와 이를 위한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협정무역(trade in pact, TIPa) 방식에서 탈피
- 인도-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미국이 선호하는 규칙·기준의 수용과 동조를 통하여 개별국의 경제·사회 기본 원리를 수렴하고 변화시켜가는 정책무역(trade in policy, TIPo) 형태를 지향

RCEP, CPTPP, IPEF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(2/6)

[TIPa와 TIPO 대비]



II RCEP, CPTPP, IPEF 개요

■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

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

- (추진경과)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속에 2011년 ASEAN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RCEP을 제안하여 협상이 개시되었음
 - RCEP에 앞서 중국과 일본이 각각 ASEAN+3(한·중·일) 및 ASEAN+6(호주, 뉴질랜드, 인도 추가) 형태의 무역협정을 제안함
 - 2019년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시장개방을 제외한 규범분야 협정문에 합의함
 - * 인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참여시 무역적자를 우려해 불참
 -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(FTA)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발효
- (참가국) 15개국
 -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아세안
 - * 아세안(10개국) : 말레이시아/필리핀/싱가포르/인도네시아/태국/브루나이/베트남/라오스/미얀마/캄보디아

- (시장규모) 인구 22.7억 명 (2020년 기준 세계 29.7%)
GDP 26.1조 달러 (세계 30.8%)
- (교역규모) 5.6조 달러 (세계의 31.9%)
- (주요 내용)
 - ① 상품관세
 - 품목 수 기준 약 92%에 대해 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
 - 다만, 일본에 대해서는 83%(품목 수 기준) 관세철폐 하되, 자동차·기계 등 민감품목은 제외
 - ② 서비스교역
 - 개방 방식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(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는 12년 이내)에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절차 시작 의무 규정
 - ③ 원산지
 -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,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, 모든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 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 신고 절차 간소화
 -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·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
 - ④ 전자무역
 - 종이 없는 무역, 전자인증,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조항
 -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
 - 컴퓨터 설비의 위치,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련 조항 등

RCEP, CPTPP, IPEF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(3/6)

⑤ 무역원활화

- 각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측가능성,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
- 통관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위한 규칙 규정

♣ 산지규정 및 관세 평가 사전 심사 및 실시 기한, 물품의 통관 수속 기간(물품이 도착하고 필요 정보가 제출된 후 48시간 이내),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(인정사업자)에 대한 수입·수출·통과방식 및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의 제공 등을 포함

⑥ 정부조달

-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속서에서 각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표

■ (주요 특징)

① 중국 주도 FTA

② 한국·일본, 일본·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었으며, 동북아 3국(한, 중, 일)이 동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

③ 관세 철폐보다는 공산품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여 RCEP 가입국 간 자원 이동, 투자확대를 꾀한 것이 가장 큰 특징

④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 계기 마련하고 역내 가치사슬 구축하는데 활용

⑤ 다만,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공산품 중간재 하청 국가로 종속시키기 위한 경제조약이라는 비판 존재

■ CPTPP(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

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-Pacific Partnership

■ (추진경과)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을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탈퇴한 뒤,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발효시킨 역내 메가 FTA

-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타결한 'TPP'에 'C'와 'P'를 추가하여 'CPTPP'로 명명

♣ '포괄적(Comprehensive)'은 상품·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디지털 등 새로운 의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의미

♣ '점진적(Progressive)'은 기존 무역협정의 교역 비용절감 문제를 넘어 노동·환경 기준 보호 등도 포괄한다는 의미

- 2020년 11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CPTPP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자 우리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

· 2021년 1월부터 가입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상황

■ (참가국) 11개국

-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칠레, 멕시코, 페루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베트남, 브루나이

■ (시장규모) 인구 5.1억명 (2020년 기준 세계의 6.7%)
GDP 10.8조 달러 (세계의 12.8%)

■ (교역규모) 5.2조 달러 (세계의 15%)

RCEP, CPTPP, IPEF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(4/6)

■ (주요 내용)

- ① CPTPP 협정문은 기존 TPP 협정문에서 지재권, 투자자 보호 등 총 22개 사항을 유예하고, 협정 발효 요건을 ‘회원국 GDP 85% 이상 비준’에서 ‘회원국 50% 또는 6개국 이상 비준’으로 완화

♣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유예된 주요내용

- ① 저작권(copyright)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
- ② 생화학(biologics)을 포함한 신약에 대한 데이터 또는 시장 보호 의무
- ③ 특허권(patent) 신청 절차 지연에 대한 특허권 기간 연장 의무 등임

- ② CPTPP는 총 30개 챕터에 걸쳐 상품무역뿐 아니라 원산지, 위생검역(SPS), 기술무역장벽(TBT), 서비스, 투자, 전자상거래, 지재권, 노동,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
- ③ 특히,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, 데이터 거래 활성화, 이동 자유화,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도 포함

■ (주요 특징)

- ① 일본 주도 FTA
- ② 농산물 개방률이 96.1%로 일반적인 FTA 개방률 73%에 비해 매우 높아 농업 피해 우려
- ③ 대만이 CPTPP 가입 선언하자마자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 가입 신청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나 강제징용 판결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

- ④ 당초 TPP는 미국이 아·태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었고,
 -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산을 기치로 미국과 일본 두 경제 대국 간 전략적 연합의 상징이었음
 - CPTPP로 출범하면서 일본 아베노믹스 대외전략의 핵심이 되었으며, 작년 9월 중국이 CPTPP 가입신청을 제출하고 미국이 IPEF 추진을 제시한 이후에는 역내 지정학적 변화와 각국의 대외전략을 반영하고 있음

■ IPEF(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)

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

- 미국은 RCEP, CPTPP에도 부재해 아태지역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 줄 위기에 처하자 2021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에서 ‘아시아 회귀(Pivot to Asia 2.0)’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버전격인 IPEF 구상을 발표
 - IPEF 목표는 ‘글로벌 경제현안에 대응한 인도태평양지역과의 경제연대 심화’
- (참가국) 13개국
 - 미국,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아세안 7개국
 - * 아세안 7개국 : 브루나이/인도네시아/말레이시아/필리핀/싱가포르/태국/베트남
- (시장규모) 인구 25억 명 (2020년 기준 세계의 32.3%)
GDP 34.6조 달러 (세계의 40.9%)
- (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) 3,890억 달러

RCEP, CPTPP, IPEF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(5/6)

■ (주요 내용 및 특징)

- ①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플랫폼으로 FTA(조약)가 아닌 행정협정(의회 비준 불필요)
- ② 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
 -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, 환경기준 강화 및 지적재산권 등 문제를 강조해 전략적으로 중국 배제
 - ※ 미국은 전기, 자동차, 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의 글로벌 생산에서 GDP 비중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 중국에 미치지 못함 (근거: 주요국 산업경쟁력지수 Hamilton Index 2022 자료, 미국)
- ③ 관세양허를 통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 허용 없이, 관련국들의 국내 규정을 미국의 법과 일치하도록 요구
 - 의무만 존재하고 유인책은 크지 않은 무역 협상이 될 수 있음

■ IPEF의 네 기둥 (Four Pillars)*

- 참가국들 간에 네 가지 기둥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, 매일 회의 개최하는 것에 합의
- 2023년 11월 미국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
- 인도는 첫 번째 기둥인 무역 영역에서 '노동과 환경기준'이 높게 적용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이 영역의 각료발표문 채택 미참여

III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

- RCEP 발효로 한-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 부품,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 게임, 애니메이션, 영화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
-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,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등 원산지 증명방법 다양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 줄어듦 전망
- CPTPP 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전망은 중소 제조업체의 적극적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하는데 효과적
- 다만,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여서 국내 농업에 타격 예상
- 미국의 일방적 주도에도 불구하고 IPEF 원칙들이 국제사회의 미래가치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 필요
- 노동자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·투자, 환경보존과 이를 위한 기술투자, 디지털경제 등을 선제적으로 경제·사회 원리로 받아들여 사회적 변화 추구 필요
- IPEF 규칙과 기준들이 노동 및 환경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수준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소기업 대응책 마련 중요

RCEP, CPTPP, IPEF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(6/6)

* 참고 : IPEF의 네 기둥

구 분	내 용	비 고
무역영역 (Pillar I - Trad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높은 기준, 폭넓고, 자유로운, 개방적 '규칙 기반'(rule-based) 무역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세양허 대신 노동, 환경, 디지털경제, 농업, 경쟁정책, 투명하고 '선의'(good)의 규제관행, 무역촉진, 경제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과 아젠다 제시 추구
공급망영역 (Pillar II - Supply Chai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고, 잘 통합된, 시장왜곡의 최소화 및 WTO 의무 규정을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핵심 부문과 상품' 규명, 공급망 위기에 대한 정부 간 공조를 위한 기구, 공급망 투명성 제고 위한 도구와 수단 등 논의
청정경제 영역 (Pillar III - Clean Econom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안보 강화, 기후변화 복원력과 적응 강화 지속가능 삶 및 양질 일자리 확보 추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속가능 농업, 탄소포집·사용·운송 및 저장, 저탄소 상품 scale-up을 위한 정책, 유인책 및 인프라 투자. 저탄소를 위한 수요조절을 통한 정부 및 민간 조달
공정경제 영역 (Pillar IV - Fair Econom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패방지, 조세포탈 방지, 국내 자원 동원의 개선 등을 추구하며, 이를 위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과 기준 등을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UN의 반부패협정(UNCAC), OECD의 Anti-Bribery Convention(ABC)의 기준을 충족

[부록] 중소기업 경기전망

12월 전망

경기전반	생 산	내수판매	수 출	영업이익	자금사정	원자재	설 비	재 고	고 용

— 최근3년동월평균
— '22.12월



자료: 중소기업중앙회 『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』

■ '22년 12월 中企경기전망지수 81.7, 두 달 연속 하락세

- 최근의 글로벌 경기 둔화, 고금리,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불안요인이 가중되어 체감 경기 약화
- '22년 10월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0.4%p 상승, 전년동월대비 0.6%p 상승한 72.1%

■ 최근 3년간 동월 SBHI* 항목별 평균과 비교시 수출과 원자재 전망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

- 주요 경영애로 추이에서 환율 불안정(21.7→20.6)과 원자재 구득난(8.6→8.5) 응답 비중 전월대비 하락

* 100 초과시 긍정 전망 / 설비, 재고, 고용은 역계열 해석

11월 동향

국제 유가

한국석유공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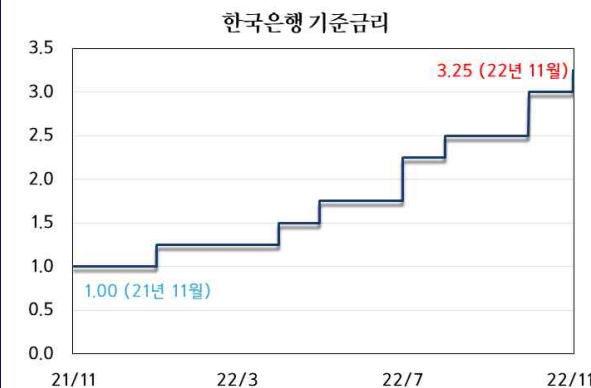
환율

한국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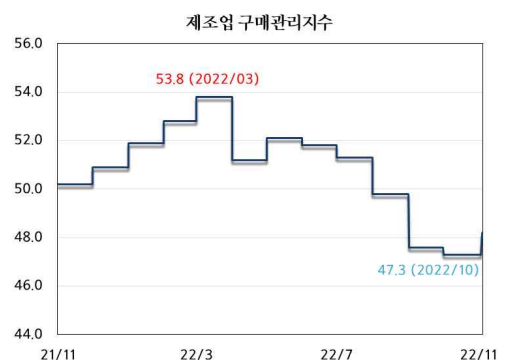
금리

한국은행



PMI

Investing.com



* 지수>50 : 경기확장, 지수<50 : 위축

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.

- 연구주제 제안
-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(이력서)
-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

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
kbizlab@kbiz.or.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